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명칭을 명시하고 기본적인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3호, '21.8.17. 공포, '22.2.18. 시행예정)됨에 따라, 지원내용,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근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음.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2.6.16. 시행예정)」 제정에 따라 가사근로자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보다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도 증대됨. 이에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서 제2021-9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 8.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제7조제5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 8.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 제29조의 제목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고
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아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업종이나 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2조제2항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고용·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업종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청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최초 지정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기준, 연장의 신청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 제목 “(고용조정 지원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구직자,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지원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업종 또는 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종류,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기준·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I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I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I 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I 제1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별표 I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I 제3호(중전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5항제8호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I 제3호는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체납한 위반행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1항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④ (생략)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전문위원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u> 8. <u>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u> <u>회</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u> 」 <u>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u> 8.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u>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u>

⑥·⑦ (생략)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역고용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32조제2항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고용·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업종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청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
---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신 설>

여 고시한다.

제29조의2(특별고용지원업종 · 고

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9조제1항

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지정 · 고시하

는 경우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

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최초 지정기간을 2년의 범위 내

에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

회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또

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

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

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

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

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신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절차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기준, 연장의 신청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구직자,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지원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
-----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나 고용위기지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③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 관련)

I.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③ ----- 특별 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 않는 -----

----- <후단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종류,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기준·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 관련)

I.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고용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II. 개별기준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별표 I 제1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별표 I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3. 고용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항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해당 법 조항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7318